

-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11. 21-----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05. 11. 22

다. 상 정 일 자 : 제133회 사하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5.12.5)상정.채택

2. 제안설명요지(황해룡 기획감사실장)

가. 제안이유

2007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준비를 위한 인력 보강과 2005년 12월말 기능직공무원의 퇴직과 관련, 현재 기능직이 담당하고 있는 일부 사무를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 맞지 않는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책정기준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정원의 총수를 조정 : 708명 ⇒ 710명 ▷ 증2명(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 : 693명 ⇒ 695명(안 제2조 제1호)
- 별표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제3조)
 - ▷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 구분청 : 482명 ⇒ 484명 ▷ 증2명

▷ 직급별 정원

- 일반직 6급 : 111명 ⇒ 114명 ▷ 증3명
- 일반직 8급 : 188명 ⇒ 187명 ▷ 감1명
- 일반직 9급 : 82명 ⇒ 83명 ▷ 증1명
- 기능직 10급 : 49명 ⇒ 48명 ▷ 감1명

《조정내역》

- 복식부기 준비인력 증원 : 2명 ▷ 행정7급1, 전산8급1
- 직종변경 : 1명 ▷ 기능(조무) 10급 ⇒ 행정9급
- 일반직 직급별 정원조정 : 증3명(6급), 감3명(7급1, 8급2)

○ 복식부기회계제도 준비와 관련하여 증원되는 구분청의 정원중 일반직 7급1명과 8급1명에 대한 존속기한은 2006. 12. 31까지로함(부칙 제②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나. 예산조치 : 증원에 따른 인건비 확보 필요
(붙임 비용소요 추계서 참조)
- 다. 입법예고기간 : 2005. 11. 1 ~ 11. 21(20일간)

4.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에 따른 인력보강과 현재 기능직이 담당하고 있는 일부사무를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맞지 않는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기준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 정원의 총수를 현 708명에서 710명으로 2명 증원(안 제2조)하고 그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693명에서 695명으로 정정(안제2조제1호)하는 등 총 정원 2명 증원에 따른 관련 직급별 수를 조정하되,
- 복식부기 회계 제도 준비와 관련 증원되는 일반직 7급 1명과, 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06. 12. 31까지로 하는 것을 부칙 제2항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됨.

5. 결의답변요지 : 생략

6. 토 론 요 지 :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